

## <資 料>

# 新株引受權과 株式讓渡

鄭 熙 喆\*

### 一. 머리 말

株式會社는 오늘날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 莫大한 資本과 勞動을 結合시킴으로써 社會經濟의 擔當者로서 核心的인 企業主體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規制할 것인가는 하나의 立法上的 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各國은 社會經濟의 變遷과 社會潮流의 흐름에 따라 그에 適應하는 法制를 만들코자 努力하고 있으며, 여기에 紹介하는 獨逸株式法, 뉴욕州事業會社法 및 日本改正商法은 모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獨逸株式法(Aktengesetz, 1965)은 1937年 Nazis 治下에서 制定된 株式法에 代置하는 것으로 1958年에 發表된 株式法報告者草案(Referentenentwurf eines Aktiengesetzes)과 1960年에 公表된 株式法政府草案(Regierungsentwurf eines Aktiengesetzes)을 土臺로 聯邦議會에서 審議를 거듭하여 1965年 9月 6日 그 法이 成立되어 1966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는 것으로서, 勞動株(Belegschaftsaktie) 制度 등을 導入하여 社會政策的인 문제까지도 이에 加味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特色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오늘날 立法의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뉴욕州事業會社法(Business Corporation Law of New York)은 1961年 4月 24日 制定公布되고 그 後 1962年과 1963年 두 會期에 걸쳐 많은 技術的이고 實體的(substantive)인 修正을 加하여 1963年 9月 1日부터 施行하고 있는 最新의 法의 하나이다. 美國에서는 州마다 다른 法律을 가지고 있고, 會社法에 있어서도 州마다 相異하여, 各州 사이의 健全한 企業活動을 阻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1928年 統一州法全國會議(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에서는 統一事業會社法(Uniform Business Corporation Act)(法務資料 第25輯에 譯載되어 있다.)을 採擇하였고, 1950年에는 美國法曹協會의 會社法委員會(the Committee on Corporate Law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理想的인 會社法의 模型을 提供할 目的으로 模範事業會社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을 公表하여, 이것을 各州가 採擇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뉴욕州의 法은 바로 이것을 模範으로 하여 制定된 것인데, 가장 進步的인 立法이라 할 수 있고, 또 뉴욕州가 美國에서 차지하는 地位로 보아 가장 重要한 立法의

\*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教授

하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法의 全文이 紹介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日本の 改正商法은 1966年 6月 8日에 國會에서 成立되어 同月 14日 公布되어 同年 7月 1日부터 施行하는 것이다. 日本의 株式會社에 관한 法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50年 美國 法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制度의 導入 등 大幅的인 修正이 加하여진 後, 1962年 株式會社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中心으로 改正이 있었는데, 그 後에도 經濟團體로부터 끊임없이 商法改正의 要望이 있어 왔다. 이번의 改正商法은 이러한 要望에 따라 ① 株式의 讓渡制限, ②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 사이의 變更, ③ 株式의 背書廢止와 不發行·寄託의 制度, ④ 議決權의 不統一行使, ⑤ 新株發行의 節次, ⑥ 新株引受權의 讓渡, ⑦ 轉換社債의 轉換請求 등에 관하여 改正 내지는 新設規定을 두어 經濟發展에 附應하고 있다.

이와 같은 獨逸, 美國, 日本에서의 새로운 法의 制定 내지는 改正은 이들 國家와 우리나라와의 經濟的인 紐帶關係로 보아 그것에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本稿는 資本團體로서의 株式會社의 資本機構와 가장 密接한 關係가 있는 新株引受權과 株式讓渡에 관한 規定만을 골라 紹介함으로써 우리 商法의 改正에 이마지하고자 한다.

## 二. 各法의 特色

### (1) 獨逸株式法

(가) 新株引受權 新株式法은 資本增加에 관하여 舊株式法에 있던 普通의 資本增加 (Gewöhnliche Kapitalerhöhung, Kapitalerhöhung aus Einlage), 附件附資本增加 (Bedingte Kapitalerhöhung), 認許資本 (Genehmigtes Kapital)에 의한 資本增加의 세 가지 외에 會社財產에 의한 資本增加 (Kapitalerhöhung aus Gesellschaftsmitteln)를 더 規定하고 있는 바, 이 마지막 것은 特別法으로 規定하였던 것을 株式法에 導入한 것이요 準備金の 資本轉入을 主로 한 것이기 때문에 新株引受權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前三者에 대하여는 新株引受權의 規定을 두고 있는 바, 舊法에 比하여 새로 新設된 것을 간추려 본다면, 新株引受權을 一括하여 어느 信用機關에게 주고, 그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新株引受事務를 맡게 하는 規定(186條5項), 條件附資本增加에 있어서의 勞動者에 대하여 新株引受權을 줄 수 있게 한 規定(192條2項3號), 認許資本에 의한 資本增加에 있어서 新株引受權의 排除에 관한 權限이 舊法에 있어서는 定款에 定한 경우에만 理事에게 授權되던 것을 新法에서는 定款에 規定없이도 理事에게 授權할 수 있도록 한 것(203條2項), 또 定款으로 勞動者에게 新株를 發行할 수 있게 한 것 등인 바, 그것의 커다란 特色은 勞動者에게 經營參加의 機會를 주기 위하여 勞動株制度를 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株式의 讓渡 株式은 舊法과는 달리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無記名株式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204條1項), 記名株式의 讓渡와 株主名簿의 名義改書에 관하여 同一條

文에 規定하고, 定款에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 會社의 同意를 얻도록 한 때에는 理事의 同意에 의하며, 특히 定款에 監事나 株主總會가 同意하도록 定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8條2項).

### (2) 뉴욕州事業會社法

(가) 新株引受權 뉴욕州事業會社法은 株主의 新株引受權과 理事 등의 新株引受權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 바, 衡平株式(Equity shares)을 가진 株主와 議決權株式(Voting shares)을 가진 株主는 定款이나 同法에 다른 定함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同種株式 또는 同種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株式 또는 證券에 대한 引受權을 가지고(622條 b 및 c 項) 會社에 대한 比率의인 權利行使를 可能な 限 維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理事, 任員 또는 從業員에 대해서도 株主總會에서 議決權株式을 가진 株主의 多數의 贊成 또는 그들이 承認한 計劃에 따라 新株引受權을 付與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株式이 株主의 新株引受權의 對象이 되는 때에는 그 株式에 대하여 新株引受權을 가지는 株主의 多數決議 또는 書面 同意를 얻도록 함으로써(505條c項) 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新株引受權을 排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특히 株式의 買受權 또는 選擇權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權利의 行使時期, 讓渡의 制限(limitation upon transferability) 등을 證券(instruments)에 記載함으로써 嚴格한 條件(505條c項)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株式讓渡 뉴욕州事業會社法은 株主의 株式讓渡, 株式引受人의 株式에 대하여 가지는 利益, 말하자면 우리 商法上의 權利株를 讓渡한 경우에도 會社債權者에 대하여 會社財産으로서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株主 또는 株式引受人으로서의 責任(未納入株金額의 納入責任 등-628條)을 免하지 못한다(629條)는 規定을 두고 있을 뿐 그 讓渡의 方法 등에 關하여는 따로 이 株式移轉法(The Stock Transfer Act)에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뉴욕州事業會社法은 理事 등에게 新株引受權을 付與하는 株主의 同意에서 그 株式의 讓渡에 關한 制限(505條e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3) 日本改正商法

(가) 新株引受權 종래 新株引受權의 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을 發生하지 않는다고 解釋되었고, 이 結果 株主에게 新株引受權이 付與된 경우, 株主가 新株에 대한 納入資金을 가지지 아니한 때 등의 便宜를 위하여 改正商法은 新株引受權의 讓渡를 定款의 規定 또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280條의 2第1項6號)이 가장 큰 特色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新株引受權의 讓渡를 인정함에 따라 많은 新設規定을 두고 있으며, 同法은 新株引受權證書를 株主의 請求에 의하여 發行하도록 하고(280條의 2第1項7號), 新株引受權의 讓渡는 新株引受權證書의 交付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다(280條의 6의 3).

(나) 株式讓渡 종래 日本商法은 우리 商法과 같이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는 定款의 規定에 의하여도 禁止 또는 制限하지 못한다(舊法208條)고 規定함으로써 株式讓渡의 絕對의인 自由讓渡性을 인정하였으나, 改正商法은 定款으로써 「株式의 讓渡는 理事會의 承認을 要

한다」는 뜻을 定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株式讓渡制限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獨逸株式法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인데, 다만 改正商法은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主의 利益을 保護하여 株式讓渡의 承認을 請求한 때에 理事會가 그 相對方에 대한 株式讓渡를 承認하지 않는 경우에는 理事會는 다른 讓渡의 相對方을 指定하여야 한다(204條의2 第2項)고 規定하고 있다. 또 改正商法은 背書制度의 形式化에 따라 株式의 讓渡에 있어서 背書의 方法 등을 廢止하고 株券의 交付(205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株主가 記名株式에 관하여 株券의 所持를 바라지 아니하는 때에는 株券을 發行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226條의 2)은 또한 注目할 일이다.

### 三. 우리 商法の 改正의 方向

#### (1) 新株引受權

우리나라 商法 第418條는 「株主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서 新株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라고 規定하여 株主의 新株引受權의 排除는 定款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具體的인 新株引受權의 讓渡에 관하여는 전혀 規定한 바 없으므로 權利株의 讓渡制限(319條)의 規定에 따라 그것의 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고 解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證券去來法 第2條 6號는 「株券 또는 新株引受權을 表示하는 證書」를 同法上의 有價證券에 포함시켜 去來의 對象으로 하고 있어, 여기서는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음을 前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商法은 이러한 特別法과 의 關係를 考慮하여 또 去來의 便宜를 위하여 新株引受權의 讓渡性을 인정하고, 또 株主의 新株引受權의 排除도 단순히 定款의 規定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해서도 排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株式讓渡

우리 商法 第335條는 「株式의 讓渡는 定款에 의하여도 이를 禁止하거나 制限하지 못한다」라고 規定하여 株主의 投下資本의 回收를 保障하고 있는데,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株式會社法의 理念이야 어떻든 同族會社 그 밖에 閉鎖的인 會社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라는 點에 비추어 볼 때에는 株式讓渡의 絶對的自由保障에 대하여 약간의 懷疑를 禁할 수 없다. 또 1928年의 美國統一事業會社法 第21條는 「株券 및 그 株券에 表彰된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는 附屬定款(by-laws)에 이를 規定할 수 있다」고 定하고 있고, 同統一株式移轉法에 있어서도 「株式讓渡의 制限禁止」規定을 두고 있지 않는 點은 注目할 만하다. 그리고 株式會社는 아무리 資本團體로서 株主가 누구냐에 介意지 않는다 하더라도 株主總會의 構成員인 株主의 人的要素를 度外視할 수 없으며, 따라서 異質的인 株主가 들어오는 것을 防止할 必要가 있다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이 볼 때에 우리나라 商

법에 있어서도 獨逸・日本の 法에서와 같이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主의 利益을 保護하면서 會社의 特殊性에 따라 定款에 株式讓渡에 理事會의 同意를 얻도록 定하는 것을 妨害하지 않도록 改正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商法이 株券의 發行(355條)을 強制하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實施되지 않는 點을 考慮하여 이에 대한 對策도 아울러 講求하여야 할 것이다.

#### 四. 新株引受權과 株式讓渡에 관한 規制

(1) 獨逸株式法(1965. 9. 6. 制定)  
(1966. 1. 1. 施行)

(가) 新株引受權

##### Ⅰ. 보통의 資本增加에 있어서의 新株引受權에 관한 規定

###### 第 186 條(新株引受權)

(1) 모든 株主에게는 그의 請求에 의하여 從前의 資本에 대한 그의 持分에 相應하는 部分의 新株가 配定되어야 한다. 新株引受權의 行使에 관하여는 2 週間 以上の 期間을 定할 수 있다.

(2) 理事는 發行價額과 同時에 前項에 의하여 定한 期間을 會社公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3) 新株引受權은 資本增加決議에 있어서만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排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決議는 法律 또는 定款에 資本增加를 위하여 定한 要件外에 그 決議에 代表된 資本의 적어도 4 分の 3 을 포함하는 多數決에 의하여야 한다. 定款은 이보다 많은 資本多數決과 기타의 要件을 定할 수 있다.

(4) 新株引受權의 全部 또는 一部를 排除하는 決議는 그 排除가 明示의으로 또 正當한 時期(第124條 1項)에 通告된 경우에 限하여 할 수 있다.

(5) 決議에 의하여 株主에 대한 新株引受를 위한 提供義務를 부담시켜 新株를 一信用機關에 引受시킨 경우에는 新株引受權이 排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理事는 新株를 위하여 支出될 費用의 納入과 引受提供의 受諾을 위하여 定하여진 期間과 아울러 그 信用機關의 引受提供을 會社公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新株가 그 信用機關 以外の 信用機關에 의하여 新株引受提供義務를 부담하여 引受되어야 할 때에도 같다.

###### 第 187 條(新株引受에 대한 權利의 確約)

(1) 新株引受에 대한 權利는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留保하여서만 確約될 수 있다.

(2) 資本增加의 決議以前에 한 確約은 會社에 대하여 效力이 없다.

##### Ⅱ. 條件附資本增加에 있어서의 新株引受權에 관한 規定

###### 第 192 條(要件)

(1) 株主總會는 會社가 新株(新株引受株)에 대하여 許容한(條件附資本增加) 轉換權 또는 新株引受權이 行使된 限度에서만 實行될 資本增加를 決議할 수 있다.

(2) 條件附資本增加는 다음의 目的을 위해서만 決議되어야 한다.

1. 轉換社債의 債權者에 대한 轉換權 또는 新株引受權을 付與하기 위한 때,

2. 複數企業의 合同을 準備하기 위한 때,

3. 會社에 의하여 勞動者에게 許容된 利益分配에 대한 參與에 의하여 그들에게 屬하는 債權의 投資에 대하여 新株의 引受를 위하여 會社의 勞動者에 대하여 新株引受權을 付與하기 위한 때.

- (3) 條件附資本의 額面額은 條件附資本增加의 決議時에 存在하던 基本資本의 半額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條件附資本增加의 決議에 反하는 株主總會의 決議는 無效이다.
- (5) 新株引受權에 관한 以下の 規定은 轉換權에 準用한다.

**第 198 條(新株引受請約書)**

- (1) 新株引受權은 書面에 의한 意思表示로써 한다(以下略).

**Ⅱ. 認許資本에 의한 資本增加에 있어서의 新株引受權에 관한 規定**

**第 202 條(要件)**

- (1)~(3) 省略
- (4) 定款은 新株를 發行者의 勞動者에 대하여 發行하도록 定할 수 있다.

**第 203 條(新株의 發行)**

- (1) 省略
- (2) 理事가 新株引受權의 排除에 關하여 決定하도록 授權할 수 있다. 이 授權이 定款變更에 의하는 경우에는 第 186 條 第 4 項을 準用한다.

**(나) 株式讓渡**

**第 10 條(株式과 假株券)**

- (1) 株式은 無記名式 또는 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2) 株式은 券面額 또는 券面額 以上の 發行價額의 全額이 納入되기 前에는 記名式이어야 한다. 分割納入의 價額은 株式에 記載되어야 한다.
- (3)과 (4) 省略

**第 24 條(無記名株式과 記名株式)**

- (1) 株式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無記名式으로 發行하여야 한다. 第 10 條 第 2 項의 規定에는 影響이 없다.
- (2) 定款은 株主의 請求에 의하여 그의 無記名株式을 記名株式으로 또는 記名株式을 無記名株式으로 變更할 것을 定할 수 있다.

**第 68 條(記名株式의 讓渡·株主名簿의 名義改書)**

- (1) 記名株式은 背書에 의하여 讓渡될 수 있다. 背書의 方式, 所持人의 權利의 證明과 그 返還義務에 關하여는 舊法 第 12 條, 第 13 條와 第 16 條를 準用한다.
- (2) 定款은 讓渡에 會社의 同意를 얻도록 定할 수 있다. 同意는 理事가 한다. 그러나 定款은 監事나 株主總會가 同意를 하도록 定할 수 있다. 定款은 同意가 拒絶될 수 있는 理由를 定할 수 있다.
- (3) 記名株式이 他人에게 讓渡된 경우에는 이것이 會社에 申告되어야 한다. 株式이 提示되고 또 移轉이 證明되어야 한다. 會社는 移轉을 株主名簿에 記入하여야 한다.
- (4) 會社는 背書의 連續과 讓渡表示의 適法性을 調査할 義務가 있으나 署名을 調査할 義務는 없다.

**(2) 뉴욕州事業會社法(1961. 4. 24. 制定)  
(1963. 9. 1. 施行)**

**(가) 新株引受權**

**I. 株主의 新株引受權에 관한 規定**

**第 622 條(新株引受權)**

- (a) 本條에 있어서 使用하는 用語는 다음과 같다.

(1) 「無制限의 配當請求權」(Unlimited dividend rights)이라 함은 優先權있는 株式에 配當을 支給한 후 에 全株 또는 一株에 대한 當期 또는 移越配當金の 差額의 總額에 관한 制限없는 配當請求權을 말한다.

(2) 「衡平株式」(Equity shares)이라 함은 利益配當 또는 殘餘財産(assets)에 관하여 優先權이 있는 없 는 묻지 아니하고, 無制限의 配當請求權을 가지는 種類의 株式을 말한다.

(3) 「議決權」(Voting rights)이라 함은 어떤 種類의 株式의 議決權을 變更하는 會社의 定款에 特定한 事由의 發生에 基因하는 것은 除外하고, 1人 또는 그 以上の 理事의 選任을 議決할 權利를 말한다.

(4) 「議決權株式」(Voting shares)이라 함은 議決權을 가지는 株式을 말한다. 그러나 第518條에 따라 議決權이 付與된 社債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新株引受權」(Preemptive rights)이라 함은 이 權利가 本條에 定해진 바에 따라 發行될 또는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에 따르게 될(to be issued or subjected to rights or options to purchase) 株式 또는 그 밖의 證券을 買受하는 權利를 말한다.

(b) 定款과 本條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衡平株式을 가진 者는 會社가 衡平株式의 發行을 豫定한 경 우 또는 衡平株式을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의 付與를 豫定한 경우에 있어서 豫定된 衡平株式의 發行 또는 衡平株式을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을 行使하거나 衡平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株式 또는 그 밖의 證券의 發行이 그 所持人의 無制限의 配當請求權에 不利하게 影響을 미칠 때에는, 理事會가 定한 相當한 期間內에 相當한 條件으로 本條의 規定에 따라 決定될 比率로 그 株式 그 밖의 證券을 買受할 權利 를 가진다.

(c) 定款과 本條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議決權株式을 가진 者는 會社가 議決權株式의 發行을 豫定 한 경우, 또는 議決權株式을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의 付與를 豫定한 경우에 있어서, 豫定된 議決權株 式의 發行 또는 議決權株式을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을 行使하거나 議決權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株 式 그 밖의 證券의 發行이 그 所持人의 議決權에 不利하게 影響을 미칠 때에는, 理事會가 定한 相當한 期間內에 相當한 條件으로 本條의 規定에 따라 決定될 比率로 그 株式 그 밖의 證券을 買受할 權利를 가진다.

(d) (b)項과 (c)項에 規定된 新株引受權은 그 新株引受權을 行使한 때에 그 所持人의 相對的인(relative) 無制限의 配當請求權과 議決權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可能한 限의 比率로, 그리고 그 株式 그 밖의 證 券의 賣渡, 引受 또는 買受를 위하여 會社가 募集引受人(underwriters)이나 證券去來人(dealers)에게 合 法的으로 支給하기로 된 相當한 費用과 報酬를 控除하지 않고, 그 株式 그 밖의 證券이 他人에게 賣渡 (sale)하기로 豫定된 價格보다 不利하지 아니한 價格으로 그 株式 그 밖의 證券을 買受할 權利를 株主 에게 付與하는 것이다. 新株引受權이 있는 各株式이 同一한 無制限의 配當請求權이나 議決權을 가지게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理事會는 그것들을 買受할 新株引受權을 가지는 株主에 대하여 提供되거나 賣渡하기 위하여 選擇될 株式 그 밖의 證券을 理事會의 意見(opinion)에 따라 그 提供當時에 있어서 所持人의 相對的인 無制限의 配當請求權과 議決權을 可能한 限 維持할 수 있는 比率로 配當하여야 한 다. 理事會에 의하여 行해지는 配當은 詐欺(fraud) 또는 不誠實(bad faith)이 없는 限 모든 株主를 拘束 하게 된다.

(e)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는 限, 賣渡를 위하여 提供되거나 또는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에 따르게 될 株式 그 밖의 證券은 다음의 경우에는 新株引受權의 對象으로 되지 아니한다.

(1) 理事會가 吸收合併 또는 新設合併을 위하여 發行하거나 또는 現金以外的 對價(consideration)로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에 따르는 경우,

(2) 第505條 (d)項에 따라 發行 또는 買受할 權利나 選擇權에 따르는 경우,

(3) 會社에 의하여 付與된 轉換權 또는 選擇權의 滿足을 위하여 發行된 경우,

(4) 自己株式(treasury shares)의 경우,

(5) 原始定款에 의하여 授權된 會社의 株式 또는 그 밖의 證券의 一部로서 그 定款의 屆出日(date of

filing)로부터 2年内에 發行, 賣渡 또는 選擇된 경우, 또는

(6) 會社의 整理에 관한 議會의 制定法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承認된 整理計劃에 의하여 發行된 경우.

(f) 第 604 條의 規定에 따라 理事會가 定한 登錄日, 또는 登錄日의 定함이 없는 때에는 第 604 條에 定한 登錄日에 新株引受權이 付與된 株主에 限하여 本條에 定해진 權利를 가지고, 그 밖의 株主는 그 權利를 가지지 아니한다.

(g) 理事會는 本條에 따라 株式 그 밖의 證券을 買受할 權利를 가지는 各株主에 대하여 第 605 條에 規定된 方法으로 그 株主가 그 株式 그 밖의 證券을 買受할 수 있는 期間과 條件을 밝히고, 아울러 新株引受權을 가지는 株主에게 買受할 權利를 行使할 比率를 明示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그 通知는 株主가 買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의 滿了前 적어도 15日前에 直接 本人에게 또는 郵便으로 送達되어야 한다. 이 規定에 따른 通知를 받은 新株引受權을 가지는 모든 株主는 그들의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相當한 期間을 가진 것으로 본다.

(h) 新株引受權을 가지는 株主에게 買受하도록 提供되고, 理事會가 定한 期間內에 株主가 買受하지 아니한 株式 그 밖의 證券은 그 後 株主가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의 滿了後 1年을 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株式의 賣渡, 引受 또는 買受를 위하여 會社가 募集引受人이나 證券去來人에게 合法的으로 支給하기로 된 相當한 費用과 報酬을 控除하지 아니하고, 株主아닌 者 1人 또는 數人에 대하여 그 株主에게 提供된 價格을 내리지 아니하는 價格으로 發行, 賣渡, 또는 選擇시킬 수 있다. 이 1年以內에 株主아닌 者에게 發行, 賣渡 또는 選擇시키지 아니한 株式 그 밖의 證券은 다시 株主의 新株引受權의 對象으로 된다.

(i) 定款과 本條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어떤 種類의 株式의 所持者도 會社가 一定時期에 賣渡할 수 있거나, 賣渡를 위하여 提供된 어떤 種類의 다른 株式 그 밖의 證券을 買受할 新株引受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는 限, 第 518 條의 規定에 따라 議決權이 付與된 社債의 所持者는 新株引受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II. 理事 등의 新株引受權에 관한 規定

第 505 條(株式을 買受할 權利와 選擇權; 理事, 任員 및 從業員에 대한 權利와 選擇權의 付與)

(a) 本條와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會社는 株式 또는 社債의 發行과 賣渡에 關聯하여 또는 이와 關聯없이 理事會에서 定하는 對價, 期間 및 條件에 따라 授權未發行株式(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 이든, 自己株式이든, 買受 또는 取得할 株式이든 묻지 아니하고 어떤 種類의 株式 또는 一連(series)의 株式을 所持人이 會社로부터 買受할 權利 또는 選擇權을 付與할 수 있다.

(b) 省略

(c)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時期와 그 때의 價格 및 讓渡에 관한 制限(any limitations upon transferability)을 포함하는 그 權利 또는 選擇權에 따른 期間과 條件은 그 權利 또는 選擇權을 證明하는 證券에 관한 帳簿(reference in the instrument) 또는 證券에 明確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d) 理事, 任員 및 會社의 從業員 또는 親會社, 從屬會社(subsidiary) 또는 同族會社(affiliate)에 계속적으로 從事하는 從屬會社 또는 同族會社의 從業員, 또는 그러한 理事, 任員 및 從業員을 위한 受託者(trustee)에 대한 그 權利 또는 選擇權의 付與는 株主總會에서 總發行株式의 議決權있는 株主의 多數의 贊成에 의하거나 議決權있는 株主에 의하여 承認된 計劃(plan)에서 同意 또는 그 計劃에 符合되는 것이어야 한다. 定款에서 買受할 權利 또는 選擇權이 付與된 株式에 新株引受權이 인정된 것인 때에는 그러한 權利의 付與 또는 計劃은 다시 그 株式에 대하여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資格이 있는 株式을 가지는 者의 多數에 의한 贊成決議 또는 書面同意(written consent)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贊成決議 또는 書面同意는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모든 株式을 가진 者가 新株引受權을 拋棄하는 것으로 된다.



(e) 理事, 任員 및 從業員에게 買受權 또는 選擇權을 付與하려는 計劃에 관한 株主에 의한 同意에는 그 權利 또는 選擇權이 付與되는 期間과 條件, 例컨대 그 計劃의 執行(administration)에 관한 어떤 制限이 없으면 全額納入 또는 分割納入의 경우에 있어서의 株金額納入의 期間과 條件, 分割納入에 대한 株券(certificates for shares)의 發行, 그 株式의 讓渡에 관한 制限 및 그 株式에 대한 對價의 全額이 納入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株式을 가진 者가 行使할 수 있는 議決權과 配當請求權에 관한 條件에 대한 同意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本條는 株式이 그 金額의 一部가 納入된 것이라는 事實을 株券의 앞면 또는 뒷면에 明白히 記載하지 아니하는 限 株金額의 全額을 納入하기 前에는 株券을 株主에게 交付하지 아니한다고 定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f) 個個의 理事, 任員 또는 從業員에 대한 그 權利 또는 選擇權의 付與에 대하여는 同意하나, (e)項에 基한 計劃에 同意하지 아니하는 株主가 있는 경우에도 (e)項에 明示한 權利의 付與의 期間과 條件은 許容된다. 그러나 그 權利 또는 選擇權을 付與받은 者가 그 權利 또는 選擇權이 付與되어 있는 株式에 대한 對價가 全額納入될 때까지는 議決權 또는 配當請求權을 許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h) (i)는 省略

## (나) 株式讓渡

### 第 629 條(株主 또는 株式引受人에 의한 株式의 讓渡: 效果)

株主가 가지는 株式을 讓渡하거나 株式引受人(subscribers)이 株式에 대하여 가지는 利益을 讓渡한 경우에 그 讓渡當時에 會社財產의 總體(aggregate)로서 正當하게 評價된 會社의 債務를 辨濟하기에 充分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러한 狀態가 切迫한(imminent) 때에는 株主 또는 株式引受人은 株主 또는 株式引受人으로서의 責任을 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會社의 財產을 會社의 債權者를 詐害하거나 債權者의 權利行使를 妨害 또는 遲延시킬 目的으로 讓渡, 隱蔽, 移轉하였거나 隱蔽 또는 移轉을 許諾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日本改正商法(1966. 6. 14. 改正公布) 1966. 7. 1. 施行

### (가) 新株引受權

#### 第 280 條의 2

(1) 會社의 成立後 株式을 發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事項으로서 定款에 定함이 없는 것은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그러나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 또는 定款으로써 株主總會가 이를 決定한다는 뜻을 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省略

5. 株主에게 新株引受權을 준다는 뜻과 引受權의 目的인 株式의 額面 無額面の 別, 種類, 數 및 發行價額

6. 前號의 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다는 것

7. 株主의 請求가 있을 때에 限하여 新株引受權證書를 發行한다는 것 및 그 請求를 할 수 있는 期間

8. 株主以外的 者에 대하여 特別히 有利한 發行價額으로써 新株를 發行한다는 것과 이에 대하여 發行하는 株式의 額面 無額面の 別, 種類, 數 및 發行價額

(2) 株主以外的 者에 대하여 特別히 有利한 發行價額으로써 新株를 發行할 때에는 定款에 이에 관한 定함이 있는 때라도 그 者에 대하여 發行할 수 있는 株式의 額面 無額面の 別, 種類, 數 및 最低發行價額에 관하여 第 343 條에 定한 決議(特別決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理事는 株主總會에서 株主以

외의者に 대하여 특히 有利한 發行價額으로써 新株를 發行할 것을 必要로 하는 理由를 開示하여야 한다.

**第 280 條의 4**

(1) 新株의 引受權을 가지는 株主는 그가 가지는 株式의 數에 따라 新株의 割當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그러나 一株에 차지 아니하는 端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株主가 新株의 引受權을 가지는 경우에는 會社는 一定한 날을 定하여 그 날에 있어서 株主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株主가 前項의 權利를 가진다는 뜻 및 新株의 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 週間前, 만일 그 날이 第 224 條의 3 第 1 項의 期間中인 때에는 그 期間의 初日의 2 週間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280 條의 5**

(1) 株主가 新株의 引受權을 가지는 경우에는 株主에 대하여 그 者가 引受權을 가지는 株式의 額面 無額面の 別, 種類 및 數, 一定한 期日까지에 株式를 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과 第 280 條의 2 第 1 項 第 6 號 및 第 7 號에 揭記한 事項의 定함이 있는 때에는 그 內容을 通知하여야 한다.

(2) 會社가 無記名式의 株券을 發行한 경우에는 前項에 揭記한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3) 前 2 項의 通知 또는 公告는 第 1 項의 期日의 2 週間前에 이를 하여야 한다.

(4) 會社가 通知 또는 公告를 하였는데도 新株의 引受權을 가지는 者가 期日까지 株式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權利를 잃는다.

**第 280 條의 6 의 2**

(1) 第 280 條의 2 第 1 項 第 6 號에 揭記한 事項의 定함이 있는 경우에는 會社는 同項 第 7 號에 揭記한 事項의 定함이 있는 때에는 그 定함에 따라, 그 定함이 없는 때에는 第 280 條의 5 第 1 項의 期日의 2 週間前에 新株引受權證書를 發行하여야 한다.

(2) 新株引受權證書에는 다음의 事項과 番號를 記載하여 理事가 이에 署名하여야 한다.

1. 新株引受權證書라는 뜻의 表示
2. 前條에 揭記한 事項(株式請約書의 記載事項)
3. 新株의 引受權의 日的인 株式의 額面 無額面の 別, 種類 및 數
4. 一定한 期日까지 株式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權利를 잃는다는 뜻.

**第 280 條의 6 의 3**

(1) 新株의 引受權을 讓渡함에는 新株引受權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2) 第 205 條 第 2 項 및 手票法 第 21 條의 規定은 新株引受權證書에 이를 準用한다.

**第 280 條의 6 의 4**

(1) 新株引受權證書를 發行한 경우에는 株式의 請求는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하여 이를 한다. 이 경우에는 第 175 條 第 1 項과 第 3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2) 新株引受權證書를 喪失한 者는 株式請約書에 의하여 株式의 請求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請求는 新株引受權證書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나) 株式讓渡**

**第 204 條**

(1) 株式은 이를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으로써 理事會의 承認을 要한다는 뜻을 定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2) 株券의 發行前에 한 株式의 讓渡는 會社에 대하여 그 效力이 없다.

**第 204 條의 2**

(1)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要하는 경우에는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主는 會社에 대하여 讓渡의 相對方과 讓渡하고자 하는 株式의 種類 및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써 讓渡를 承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讓渡의 相對方을 指定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

(2) 前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讓渡를 承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理事會는 다른 讓渡의 相對方을 指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뜻을 前項의 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2 週間內에 同項의 株主에 대하여 書面으로써 通知하여야 한다.

(3) 前項의 期間內에 同項의 通知가 行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第 1 項의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 204 條의 3**

(1) 前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者는 同項의 通知日로부터 10 日內에 同條 第 1 項의 株主에 대하여 書面으로써 同項의 株式을 自己에게 賣渡할 뜻을 請求할 수 있다.

(2) 前項의 請求를 하는 때는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純資產額을 이미 發行한 株式의 總數로써 나눈 額에 前條 第 1 項의 株式의 數를 곱한 額을 會社의 本店所在地의 供託所에 供託하고 또 이를 證明하는 書面을 前項의 書面に 添附하여야 한다.

(3) 前條 第 3 項의 規定은 第 1 項의 請求가 同項의 期間內에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4) 第 1 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株主는 1 週間內에 第 2 項의 供託所에 株券을 供託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第 1 項의 請求를 한 者에게 供託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5) 前項의 供託이 同項의 期間內에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 1 項의 請求를 한 者는 賣買의 解除를 할 수 있다.

**第 204 條의 4**

(1) 前條 第 1 項의 請求가 있을 경우에 賣買價格에 관하여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當事者는 同項의 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20 日內에 法院에 대하여 賣買價格의 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2) 前項의 決定을 하는 때는 法院은 前條 第 1 項의 請求時에 있어서 會社의 資產狀態 그 밖의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야 한다.

(3) 第 1 項의 期間內에 同項의 決定의 請求가 없을 때에는 前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한 額으로써 賣買價格으로 한다.

(4) 株式의 移轉은 代金を 支給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5) 株式의 賣買價格이 前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한 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賣買價格이 確立된 때에 代金の 支給이 있는 것으로 본다. 賣買價格이 供託한 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도 代金 가운데 供託한 額에 相當하는 部分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6) 第 204 條의 2 第 3 項의 規定은 賣買價格과 供託한 額과의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의 支給이 없기 때문에 株主가 賣買의 解除를 한 때에 이를 準用한다.

**第 204 條의 5**

(1) 株式의 讓渡에 관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要하는 경우에는 競賣 또는 公賣로 인하여 株式을 取得한 者는 會社에 대하여 그 株式의 種類 및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써 取得을 承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株式을 買受한 者를 指定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 204 條의 2 第 2 項 第 3 項 및 前 2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05 條**

(1) 株式을 讓渡함에는 株券을 交付하여야 한다.

(2) 株券의 占有者는 이를 適法한 所持人이라고 推定한다.

**第 226 條의 2**

(1) 株主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記名株式에 관하여 株券의 所持를 바라지 아니한다는 뜻을 會社에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發行된 株券이 있는 때에는 이를 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

(2) 前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會社는 지체없이 株券을 發行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株主名簿에 記載하고 또는 株券을 銀行이나 信託會社에 寄託하고 또 그 記載 또는 寄託하였다는 뜻을 株主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會社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記載를 한 때에는 株券의 發行은 이를 할 수 없고, 또 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에 提出된 株券은 이를 無效로 한다.

(4) 第1項의 申請을 한 株主는 언제든지 株券의 發行 또는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株券返還의 請求는 會社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5)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券의 寄託에 드는 費用은 會社의 負擔으로 한다. 그러나 株券返還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株主에 대하여 前項의 規定에 의한 株券發行의 경우에 있어서 株主가 負擔할 費用에 相當하는 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